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illegible]

| 현행                                                                                                                                                                                                                                                                                                                                                       | 개정안                                                                                                                                                                                                                                                                                                                                       |
|----------------------------------------------------------------------------------------------------------------------------------------------------------------------------------------------------------------------------------------------------------------------------------------------------------------------------------------------------------|-------------------------------------------------------------------------------------------------------------------------------------------------------------------------------------------------------------------------------------------------------------------------------------------------------------------------------------------|
| <p>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u>청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0. (생략)</p> <p><u>&lt;신설&gt;</u></p> <p>31. ~ 63. (생략)</p> | <p>-----</p> <p>-----</p> <p>-----</p> <p>-----</p> <p>-----</p> <p>-----<u>청구하여야 한다.</u>-----</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46조(벌칙) -----</p> <p>-----</p> <p>-----</p> <p>1. ~ 30. (현행과 같음)</p> <p><u>30의2. 제17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u></p> <p>31. ~ 63. (현행과 같음)</p> |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이하 “내부자”)가 해당 법인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short swing)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sup>1)</sup>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라도 자기가 속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권리가 있지만, 내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알게 된 중요한

1)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2., p.883.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면 일반투자자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는 허용하되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은 거래를 한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회사에 귀속시킴으로써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舊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법인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무관련성과 내부정보이용을 요건으로 하였으나,<sup>2)</sup>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무관련성과 내부정보이용 요건을 배제하고 있음.<sup>3)</sup>

2) 「舊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거래의 제한) ②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그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

□ 한편, 현행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 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4)</sup>

□ 그런데,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실적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음.

○ 최근 5년 동안 단기매매차익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총 705억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이 중 150억원이 환수되어 환수율이 21.3%에 그치고 있음.

[표1]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통보건수                | 31     | 20     | 15     | 6     | 10    | 82     |
| 통보액                 | 17,797 | 27,555 | 18,581 | 2,803 | 3,741 | 70,477 |
| 환수액                 | 7,810  | 5,850  | 105    | 56    | 1,219 | 15,040 |
| 미환수액                | 9,641  | 10,970 | 14,095 | 2,747 | 1,532 | 38,985 |
| 확인불가 <sup>주2)</sup> | 346    | 10,735 | 4,381  | -     | 990   | 16,452 |

주1: 2023년말 기준(작성시점에 2024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아 2024년 환수액 확인 곤란)

주2: 상장폐지 등으로 사업보고서 공시가 곤란 한 경우 등 공시취약법인에 대해서는 통보액 중 환수 및 미환수 금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자료: 금융감독원)

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청구를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단기매매차익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금융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제도가 회사와 내부자 간의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한 것이므로 행정기관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과거에는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대위청구권이 있었으나<sup>5)</sup>,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위청구권이 폐지되었으며, 대신 보완장치로서 주주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sup>6)</sup>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유사한

---

5) 「舊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에탁 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둘째, 개정안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행사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내부자의 반환 의무규정이나 반환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등의 근거가 미비하므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보 사실 미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은 사업보고서 등에 단기매매차익 통보·환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sup>7)</sup>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sup>8)</sup>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보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미공시에 대해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⑨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금융감독원)

제11-3-3조(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공시대 기간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의 전체 건수 및 총액과 환수한 건수 및 환수총액 등을 < 표1 >에 기재하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그 미환수 현황을 < 표2 >에 기재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서도 제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 대상인 법인이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공시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sup>9)</sup>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는 이미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sup>10)</sup> 단기 매매차익 발생 등은 이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이므로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단기매매차익의 적극적 환수를 통한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성격, 반환 청구권 행사 의무화의 실효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11 |
|--------------|

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2023년 공시대상 16개 법인 가운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단기매매차익의 공시를 누락한 법인은 상장폐지된 1개 법인에 불과함.

10) 상장회사협의회는 미반환 사례의 원인이 주주의 장기 해외체류, 연락두절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